

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| | |
|----------|----|
| 의안 번호 | 17 |
|----------|----|

제안년월일 : 2010년8월2일
제안자 : 운영위원장

1. 제안이유

- 효과적인 예·결산 심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정수를 개선하는 것을 제안함.

2. 주요내용

-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정수를 27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함.(안 제10조 제5항 단서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규 : 해당사항 없음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·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5항 중 “27명 이내로”를 “30명 이내로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 조문 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|---|
| <p>제10조(특별위원회)</p> <p>⑤ 특별위원회 위원정수는 20명을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정수는 <u>27명 이내로</u> 한다.</p> | <p>제10조(특별위원회)</p> <p>⑤ ----- ----- . ----- ---- <u>30명 이내로</u> ----.</p> |